

# 2020년도 제27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자 : 2020. 10. 30.(금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백대용 위원(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88건(안건번호 제2020-141745호~141814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Ⅲ. 주요내용

- A 위원 : 본건 심의안건은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고, 개별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원도 존재하지 않아 보이며, 저작권자가 모두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저작물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의 유포는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됨. 특히, 이번 안건들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영상 및 음악저작물로 보호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안건번호 제2020-141745호~141814호는 불법복제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심의안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B 위원 : 본 심의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공중에 전송하는 게시물 70개에 대한 것이다. 제출 자료에서 최근 방송물과 음악저작물을 불법 복제한 188개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공중에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저작물의 공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원회에서 저작권법에 따라 시정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 C 위원 : 금번 심의안건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3조 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 등 13개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188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

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 건인바, 각 게시물의 저작권 침해 개연성이 인정되고 중점 모니터링 대상으로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 안건번호 제2020-141745호~141814호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영화, 방송), 음악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2020년 제271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1. 6.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